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8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

현행	개정안
	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①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경우, ②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③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현재 매년 구조되는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 중 약 2만 마리의 동물이 미분양·질병 등의 사유로 인도적 처리가 되고, 그 시행을 한 수의사의 대다수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²⁾³⁾

【지자체별 동물 구조 신고 처리 현황(2023년)】

(단위 : 마리, 비율(%))

구분	구조 신고된 동물 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전국	113,072	15,09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2,106
		13.3%	12.1%	24.2%	2.9%	27.6%	18.0%	1.9%
서울	5,175	277	1,229	1,358	193	1,526	557	35
부산	5,338	459	586	1,099	6	2,994	142	52
대구	4,555	144	442	1,419	0	1,977	542	31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에 참여한 지자체·동물보호센터 근무 수의사 48명 중 91.9%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일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에 비해 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응답함

3) 전라일보, “동물 사랑해서 수의사 됐는데 안락사 시키라니요?”, 2023. 6. 12.

URL: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456>

구분	구조 신고된 동물 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인천	5,731	436	838	1,858	105	1,840	497	157
광주	3,045	270	432	558	53	1,419	308	5
대전	1,733	201	194	415	17	1,290	98	7
울산	2,956	813	717	480	21	177	130	129
세종	588	77	20	199	2	103	164	442
경기	21,966	2,080	3,270	4,725	1,345	4,846	5,433	267
강원	5,805	1,357	802	1,229	33	1,241	1,031	112
충북	4,562	568	638	1,343	66	831	1,043	73
충남	8,742	1,260	822	2,156	153	2,125	1,925	301
전북	9,084	1,705	677	2,890	432	2,425	791	164
전남	9,703	2,116	705	1,729	58	2,945	1,861	289
경북	8,405	1,353	934	2,854	103	1,525	1,543	93
경남	11,197	1,745	1,037	2,550	518	2,779	2,305	263
제주	4,487	232	285	481	213	1,195	1,976	105

※ 기타는 포획 불가, 방사(예 : 고양이)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의 정신건강

을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한 가축방역관에게 심리·정신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유사입법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라 수의사의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⁴⁾

동 조항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재난·사고 상황에서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인용 조항을 수정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 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시 발생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⁵⁾

문 의 처
02)6788-5424

5)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수의’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에 따라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임.